

SH공사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요지

신·구 조문 대비표

1. 개정이유

- 2015년 국민권익위 「부패방지 시책평가」에 반영
 - 현재 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사례 및 반부패수범사례를 시행하여 공사 청렴도 성과 평가에 기여
 - 우리공사도 국민권익위에서 선정한 모범사례를 사규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관계 방지(제5조제2항제10호 신설)
-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(제10조의2 신설)
-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(제20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협의 : 해당없음
- 절차 :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- 기타 참고사항 : 신구조문대비표 1부

현 행	개정안
제5조(직무수행의 기본자세) ① (생략)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~9 (생략) <신 설>	제5조(직무수행의 기본자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~9 (현행과 같음) 10. 하도급 거래의 상대방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·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. 단, 목적물의 품질유지·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<신 설>	제 10조의2 (제직 중 취업청탁의 제한)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20 조 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① ~ ③ (생략) <신 설>	제 20 조 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임원,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7조의3에 따라 임용된 건설경영전문가와 인사규정시행내규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20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	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